



미래지향적 입법

정권이 바뀌고 팬데믹 상황이 엔데믹으로 바뀌어 가는 순간이다. 코비드 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배달문화의 급속한 확산, 온라인 수업의 강화, 재택근무의 확대 등과 같이 점진적 개혁이 아닌 혁명과 같은 급진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계도 마찬가지다.

현행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던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려는 순간이다. 정부의 정책이 그러하듯이 한시적, 시범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은 향후 전면적 실시를 예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간 의료계와 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던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더니 드디어 전면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지만 대세를 막을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해관계 있는 집단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이익집단의 당연한 의무다.

새로운 제도의 전면적 시행에 더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것에 비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의 경우 법령의 체계나 조문의 배열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물론 조문의 내용도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많다.

약사법 역시 예전부터 약사법과 제약법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하위법령에의 위임으로 인해 고시·예규 중심의 법령이라 불릴 정도다. 이럼에도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된 조문 하나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개정안만 난무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103건에 이른다(일부 처리된 법안 포함). 대통령 선거로 여야가 정신이 없었음에도 3건



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약사법은 사정이 좀 낫다. 전체 62건이 계류중이고 그중 20여건이 처리되었다. 의료법과 같이 올해 3건이 발의되었다. 계류된 개정안 중 전면 개정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단기적인 실적만을 내세우는 입법형태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지금처럼 환경, 기후, 사회, 인구구성의 변화가 빠른 적은 없었다. 기술의 발전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 법률은 항상 현상을 뒤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느리다. 또한 변화된 사회를 규율할 수 있는 체계적·전면적 입법이 아쉽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미래지향적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권 대표변호사/의사

TEL. 02 565 9801

E-mail. kklee@lkpartner.co.kr